

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교부하려 하였으나, 폐문·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12. 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1. 건 명: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공시송달 내용
1	이ㅇ은	96.07.15.	평택시 서정동 (이하 생략)	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	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	등 서류를 '21.10.19., '21.11.25, 두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(폐문부재)

4. 공고기간: 2021.12.9. ~ 2021.12.2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정수경(Tel. 031-646-128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